

의안 번호	256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6. 3. 24.(화)
- 나. 발 의 자: 안영호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2026. 3. 24.(화)
- 라. 심사일자: 2026. 4. 1.(수)

2. 제안설명 요지(안영호 의원)

- 의회 의원의 등록 절차, 의장·부의장 선거 및 임기 관련 규정, 표결 참가, 투표 방식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의회 구성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의원 등록 시점 및 그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 나. 의장·부의장 선거 절차에 있어서 시기, 후보자 등록, 당선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함.(안 제11조)
- 다.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
- 라. 표결의 참가, 방법, 투표 및 개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1) 표결의 참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48조의2)
 - 2) 표결방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규정 신설(안 제49조)
 - 3) 전자투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안 제50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 병기, 띄어쓰기 등 정비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57조, 제74조 및 제83조

나. 「국회법」 제2조, 제9조 및 제15조

※ 참고자료: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의원 등록 시기를 '임기 초'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앞당기고 사전 서류 접수 규정을 제1항에 흡수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당선인 지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중복 규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적절함.(안 제3조)
-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기, 후보자 등록, 당선자 결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선거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안 제11조), 임기를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맞추어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안 제12조)
- 또한 표결 참가 절차의 명확화, 표결 방법별 회의록 작성 규정 신설, 전자투표 절차의 명문화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의회 운영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음.(안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 종합의견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등록 시점의 현실화, 의장·부의장 선거 절차의 체계적 정비, 임기 규정의 명확화, 전자투표 절차의 신설, 조문 가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83

조에 따른 의회의 자율적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음. 이에 입법취지가 명확하고 조문 내용이 현행 운영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바, 규칙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법」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 ·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